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620 |
|------|-----|

2023.04.26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3월 29일, 신복자 의원(찬성자 22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4.26.) 상정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성연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디지털미디어시티 공급부지의 대부분이 기 매각되어 디지털미디어 시티 기획위원회 안건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비상설화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원회 정비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것임.

- 또한 기획위원회 심의 기능 축소에 따른 당연직 위원장, 위원장 수, 간사 직급 현실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기획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의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문구 수정함(안 제13조)
- 나.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장 수 변경, 간사 직책 현실화와 위원회의 비상설화 명문화, 해촉 규정 관련 조항을 정비함(안 제14조)
- 다. 상설위원회의 규정인 위원의 임기 조항은 삭제하고, 위원회 해촉 규정은 제14조에 삽입하였으므로 삭제함(안 제15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성이 마무리 되면서 심사 안전이 대폭 감소한 기획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심의기능 축소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.

나. 디지털미디어시티 및 기획위원회 현황

- 디지털미디어시티(이하 ‘DMC’)는 2000년 서울시가 발표한 상암 새천년신도시 건설계획의 핵심사업으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조성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집적단지임.
- 「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」는 DMC의 기반조성과 입주자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됨(2002.1.5.).
- 조례에 근거한 DMC기획위원회(이하 ‘기획위원회’)는 DMC에 관한 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고, ▶정책수립, ▶중점 유치업종, ▶핵심사업, ▶택지의 공급기준, ▶시설의 지정·개발 등의 심의를 담당함.

< DMC기획위원회 >

○ 구 성

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, 서울시 경제정책실장, 도시계획국장, 디지털정책관, 서울연구원 원장,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외 10명의 학계 및 산업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.

○ 기 능

1. 정책 수립 2. 중점유치업종 3. 핵심사업 4. 공급기준 5. 시설의 지정·개발

○ 개최 실적

| 구 분 | '13년 | '14년 | '15년 | '16년 | '17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 '23년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위원회 | 5회 | 2회 | 3회 | 2회 | 3회 | 2회 | - | - | - | - | 1회 |

※ '19~'22년 : 안건 없어 미개최(DMC 공급부지 대부분 매각으로 안건 대폭 감소)

- DMC는 2023년 3월 현재 총 공급부지 52필지 중 49필지가 공급이 완료되어 방송, 영화, 게임, IT 등 디지털 M&E 사업 분야에 1,118개 기업이 입주해 48,565명이 종사 중임.
- 미공급부지 3필지는 교육첨단부지와 랜드마크 부지로 활용될 예정임.

〈 DMC 용지공급 현황 〉

| 구분 | 합계 | | 공급 | | 미공급 |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필지 | 면적(m ²) | 필지 | 면적(m ²) | 필지 | 면적(m ²) |
| 필지수 | 52 | 335,655.4 | 49 | 290,866.8 | 3 | 44,788.6 |

- 대부분의 필지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크게 감소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, 2023년 3월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 공모 등을 심의하기 위해 1회 개최됨[참고자료].
- 이에 따라 서울시 ‘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조사’ 결과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분류됨.

〈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조사〉

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비대상 (총65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·(제13조~제15조) 위원회 활동 점검, 위원회 통합·폐지, 위원회 운영공개·보고 등 - 추진내용 : 위원회 전수조사 및 위원회 활성화·통폐합 등 정비 ▶ 위원회 조치 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적 저조 위원회 정비 : DMC기획위원회 등 27개 위원회 비상설화 - 사유 : 목적·기능상 운영 필요하지만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- 비상설화 방법 : 조례 개정(17개), 법령 건의(10개) |
|--|

다. 위원회 비상설화와 관련 규정의 조정(안 제13조~안 제16조)

- 개정안은 기획위원회 설치근거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(안 제13조),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함.
- 위원장 정수를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(안 제14조제1항), 당연직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시장과 정책관(국장)에서 행정1부시장과 담당 사무관으로 조정함(안 제14조제2항·제3항).
-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은 회의 종료시 해촉된 것으로 변경하고(안 제14조제6항),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(제15조)을 삭제함.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13조(설치 및 기능) 디지털미디어시티에 관한 <u>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고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| 제13조(설치 및 기능) <u>시장은</u> 디지털미디어 시티에-----정책자문과----- ----- ----- 구성할 수 있다. |
| 제1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 제14조(구성) ① ----- 2명----- -----. |
|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시장</u> 과 위원 중 호선된 사람 <u>2명</u> 으로 한다. | ②-----행정1부시장----- -----1명-----. |
| ③~④ (생략) | ③~④ (현행과 같음) |
|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디지털 미디어시티 담당정책관</u> 이 된다. | ⑤----- -----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|
| ⑥<신 설> | ⑥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,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|

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15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장기 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으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| <p>본다.</p> <p>< 삭제 ></p>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심의 안전이 감소하고 기능이 축소된 기획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
위원장의 수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 전반을 재조정함으로써 보다
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 아직 미공급된 교육첨단부지와 랜드마크부지의 경우 매각
금액의 규모가 크고 입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전문성이
요구되므로 위원회 비상설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
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복자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620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신복자, 강석주, 경기문,
곽향기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중, 김지향,
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
박춘선, 심미경, 유정인,
이병운, 이상욱, 이종환,
이효원, 장태용, 최민규,
최유희, 황유정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디지털미디어시티 공급부지의 대부분이 기 매각되어 디지털미디어 시티 기획위원회 안건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비상설화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원회 정비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- 또한 기획위원회 심의 기능 축소에 따른 당연직 위원장, 위원장 수, 간사 직급 현실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기획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의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문구 수정함(안 제13조)
- 나.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장 수 변경, 간사 직책 현실화와 위원회의 비상설화 명문화, 해촉 규정 관련 조항을 정비함(안 제14조)
- 다. 상설위원회의 규정인 위원의 임기 조항은 삭제하고, 위원회 해촉 규정은 제14조에 삽입하였으므로 삭제함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디지털미디어시티에”를 “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”로 하고, “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고”를 “정책자문과”로 하며, “둔다”를 “구성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4조 제1항 중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2항 중 “시장”을 “행정1부시장”으로, “2명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5항 중 “디지털미디어시티 담당정책관이 된다”를 “담당사무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,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3조(설치 및 기능) <u>디지털미디어시티에</u> 관한 <u>시장의 정책 자문에 응하고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1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<u>3명</u>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시장과</u> 위원 중 호선된 사람 <u>2명</u>으로 한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디지털미디어시티 담당정책관이</u> 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5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</p> <p>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</u></p> | <p>제13조(설치 및 기능) <u>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</u>---<u>정책자문</u> <u>과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성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4조(구성) ① ----- <u>2명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행정1부시장</u>-- ----- <u>1명</u>----- -----.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담당사무관으로 한다</u></p> <p>⑥ <u>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,</u> <u>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</u> <u>해촉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< 삭제 ></u></p> |

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으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위원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